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김영주・맹성규・백혜련

임오경・박 정・송옥주

박광온 • 안민석 • 신동근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·협력에 대한 제한·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음. 또한 정부의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 조치로 인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·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, 이로 인하여 교역 또 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 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

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17조의2 및 제24조의2).

법률 제 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·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때까지 제2항에 따른 수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)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·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 - 1. 북한이 남북교류·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
 - 2.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남북교류 협

력에 참여하는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

- 3.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(國際共助)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남북 교류·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

원하거나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⑥ 정부는 제3항의 사유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 ·협력의 제한·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제한·금지 사유 외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제한·금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⑨ 통일부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 금지를 변경 및 해제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17조의2(협력사업의 신고) ① 제17조의2(협력사업의 신고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<u>신고를</u> 받은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• 협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 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 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・협 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 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 다.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.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<신 설>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2항에 따른 수 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. <신 설> 제24조의2(남북교류·협력의 제 한・금지) ① 통일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남북교류 • 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- 1. 북한이 남북교류・협력에대하여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
- 2.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남북 교류·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(國際共助)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남북교류·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 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

정우에는 교역당사자 및 협력 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 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 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 및 경제 분야 협 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 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 (5) 정부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 (6) 정부는 제3항의 사유로 교

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

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 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 거나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 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- ①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·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제한・금지 사유 외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제한・금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・협력의 제한・금지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⑨ 통일부장관은 제7항 및 제8

 항에
 따라
 남북교류・협력의

 제한・금지를
 변경
 및
 해제할

 경우
 지체
 없이
 국회에
 보고하

 여야
 한다.